



## '98하반기

# 농약원제 할당관세 적용시한 연장

수량 1만3천톤, 세율 2% 계속 적용  
추천 유효기간 20일, 연장신청 및 분할추천제 등 신설

### 업무부

관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5822호, '98.7.1)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하반기 농약원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통합 제정, 공고되었다. 수량은 1만3천톤이며 세율은 계속 2%를 적용 받게 되었다. 또한 추천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이며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때는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전에 제출해야 하고 추천물량을 나누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추천물량 수입을 포기하거나 추천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또는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추천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번에 공고된 농림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소개한다(편집자 註).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5822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중 농림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시장 접근수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접근수량이 설정된 품목의 할당관세 수입추천물량은 「재정경제부령 제7호의 시장접근수량증량에 관한 규칙('93. 3. 9)」에 의한 품목별 시장접근수량 범위내로 한다.

③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이 한계수량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할당관세를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 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해당품목의 추천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농림부장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효기간연장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을 만료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98년 12월 31일)을 경과 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 추천서를 교부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신청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월 할당관세 추천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추천기관의 장은 이 요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과 사전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공고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별표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③ (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 부터 농림부 공고 제 97-74, 97-75, 97-78, 1998-5호는 폐지한다.

농약정보